##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4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최은석·김종양·박충권

김태호 · 서일준 · 고동진

신성범 · 김형동 · 이인선

박정하 · 김소희 · 김선교

김위상 · 서범수 · 김은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 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 (宣揚)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 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장제보조비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 공자,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 (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 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lt;신 설&gt;</u>	제 정 안  제26조의3(장제보조비 지원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 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 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